71-6410000-000965-10







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0965-10







Contents

신산업

]1 택배자 사고·고상시 대제 자랑 대여 서비스 ·······	07
12 인공지능 로봇 활용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 연료생산 ······	06
기업애로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 상품 출시 ········	13
)2 자연보전권역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 두배로 확대	16
03 융·복합 기업을 막는 지식산업센터 입지 규제 개선 ······	18
<mark>04</mark> 소규모 제조기업의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불가 규제 개선······	20
05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해소	24
06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증설, 틈새 규정으로 해결	26
07 조례개정을 통해 외투기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29



규제합리화

공공행정

02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A to Z』 건축물표시(용도)변경 'ONE STOP 서비스'	36
03 어린이집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국도비 지원사업 3년연장	39
04 훼손된 GB의 공원녹지 복구를 위한 제도개선 ······	····· 4
05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규제개선	43
06 개발제한구역 수질관련 해제기준 완화	4
생활 · 불편	
<u> </u>	
01 광명시흥 공공 주택지구 관련 원주민 차별법령 개정······	49
<u>-</u>	
01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관련 원주민 차별법령 개정	50
01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관련 원주민 차별법령 개정······ 02 개발제한구역 내저온저장고 설치 절차 불편 해소·····	50 50
01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관련 원주민 차별법령 개정 02 개발제한구역 내저온저장고 설치 절차 불편 해소 03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개선을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50 50



규제합김화



PART 01

신산업

- 01 | 택배차 사고 · 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 02 | 인공지능 로봇 활용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 연료생산



2023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택배차 사고·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 추**진부서** |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287

추진배경



- 영세 택배사업자는 운행하던 택배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
 - 운행이 지연될 경우 계약 택배 물량의 변상 문제(식품 변질 등)가 발생하고, 차량 수리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집하 작업 문제로 거래처 단절도 우려
 - 용달 차량과 기사를 함께 빌리는 소위 '용차'는 가능하나, 이 경우 차량 임차료 외기사 인건비까지 추가 지불해야 하므로. 영세한 택배 사업자에 부담이 됨.
- 결국 영세 택배사업자는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점검이나 수리 기간이 긴 고장에 대한 근본적 수리 등을 기피 하게 될 유인이 커, 차량 안전 문제 발생
 - → 부천 소재 기업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택배차 사고 · 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사업 모델을 구상하였으나, 관련 규제의 벽에 부딪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관련 규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시설·장비 및 영업점 요건이 엄격(예: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 영업점 등)

개선내용



개선 전

영세 택배사업자는 운행하던 택배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부재

- 운행지연으로 인한 택배물량 변상,수리기간 장기화 경우 거래처 단절 우려
- 대체 차량을 빌릴 경우 차량뿐아니라 기사도 함께 고용하게 되어 비용부담 추가 발생

개선 후

택배차 사고 · 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사업화

- 택배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예비차량 (동급의 자가용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하는 서비스 실증 특례 부여
- 기존 회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 제한받던 사항 일시적 규제 완화



추진과정



해당 사업 모델은 경기도 컨설팅을 거쳐 제27차 신산업 · 신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지정되어, 서비스 개시

2021. 03. 11.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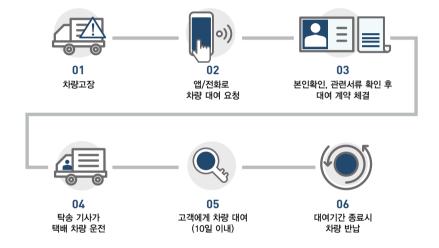
2021, 04, 02.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기업 면담 실시

2023. 03. 11. ICT 규제실증특례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04. 19. 제27차 신산업 · 서비스 심의위원회 실증특례 지정

- (실증범위) 수도권 일대, 대여차량 30대 (1차년도 10대. 2차년도 30대까지)

2023. 11. 29. 실증특례서비스 개시 통보(2023. 12. 01 ~ 2025. 11. 30.)









- 차량 사고 또는 고장시 배달 지연으로 인한 영세 택배사업자의 피해를 방지
- 택배 사업자가 배송 지연 우려로 차량의 수리 및 점검을 기피 하는 문제 해결



인공지능 로봇 활용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연료생산

'肿 추진부서 │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287

개선배경



- 수원소재의 한 기업은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여 투명페트병·폐비닐 등 재활용 자원을 대량 분류¹⁾ 후, 수집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 연료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하였음.
- 그러나 이는 기존과 양태가 다른 재활용 사업모델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모호하여. 사업의 진행 결정에 곤란을 겪고 있었음.
 - 기업은 해당 사업모델이 자칫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
 - *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압축 · 밀폐 차량 및 별도의 야적 시설, 폐기물 중간 처리 인력을 마련해야 하나, 해당기업의 경우
 - 로봇 내부에 고속압착기 장착/별도 박스로 운송 → 별도의 압축 · 밀폐차량이 불요
 - 열분해정제유 기업에 직접 납품 → 별도의 야적 시설, 폐기물 중간 처리 인력 불요
 - → 수원 소재 기업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개선내용



개선 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열분해유 연료로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 그러나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적 용을 받을 경우 불합리한 규제 발생 (필요치 않은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해 야 함)



개선 후

●경기도의 컨설팅, ❷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 ❸환경 부의 적극해석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이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자원을 분류 후, 수집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 연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업화가 가능해짐

¹⁾ 해당 기업의 분류 방식은 다중투입방식(예:페트병 등 재활용품 묶음 투입)으로, 이는 기존의 단일투입방식(예:페트병 1개씩 투입) 대비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우수하며, 공동주택 등 재활용품 배출량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추진과정



2023. 03. 29.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2023, 04, 03,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기업 면담 실시

2023. 07. 07. ICT 규제실증특례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09. 26. 제30차 신산업 · 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회신

- 사업 추진 가능 : 적극해석²⁾
 - (환경부) 수집·운반 하려는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병, 폐비닐은 폐포장재에 해당하므로 폐기물 처리 신고(폐기물관리법 제46조) 후 사업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 (신청 기업) 현 사업 단계상 폐기물의 분류 및 수집만 하는 것을 수용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성장 이끈다



-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다중투입방식의 재활용자원 분류로 사용자 편의제고
- 수집된 폐기물을 열분해유 원료로 활용하여 자원 선순환, 탄소 배출량 저감

²⁾ 적극해석은 개별법상 규제특례 부여 대상은 아니나, 적극적인 기업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현행법령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 소관 부처에서 정책을 권고하거나 규제 없음을 확인하여 신청 기업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개시를 돕는 특례 방법



PART 02

기업애로

- 01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 상품 출시
- 02 | 자연보전권역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 두배로 확대
- 03 | 융·복합 기업을 막는 지식산업센터 입지 규제 개선
- 04 | 소규모 제조기업의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불가 규제 개선
- 05 |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해소
- 06 |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증설, 틈새 규정으로 해결
- 07 | 조례개정을 통해 외투기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2023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기업애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 상품 출시

☆ 추진부서 │ 안산시 위생정책과 ☎ 031-481-3975

- 100㎡이상 음식점은 「재난안전법」 제76조의5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와 폭넓은 보장이 되는'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덜어 주고 있음
- 2021년에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음식점 85%인 약75만 개소(22년 8월 행정안전부) 소규모음식점(100㎡미만)이 가입 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없는 상황으로, 저렴한 보험료와 화재 등 위험에 대비해야 할 보험상품이 필요

개선배경



개선내용



개선 전

소규모(100㎡미만) 음식점은 「재난안전법」제76조의5에 따라 재난희망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라 사보험을 제외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 등 타인의 생명·재산상의 손해배상에 대비 할 수 보험이 없었음.



개선 후

2023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실무편람 개정을 통해 소규모(100㎡미만) 음식점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재난희망보험' 출시.

이에 저렴한 비용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예측 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한 대비가 가능

▲ 개정된 법령(지침)내용







추진과정



- '21.2. 소방서 등 유관단체 · 기관 연계를 통한 음식점 화재 실태 조사
- '21.3. 소규모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출시 가능성 등 보험사와 협의 - 소액 보험료이면서 보장성이 커서 보험사에서 상품 판매 꺼림
- '21.9. 안산시 제도개선 과제 제출(전국 최초) - 소규모 음식점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안
- '22.5. 중앙부처 협의 결과 '일부 수용' - 소규모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보험상품 출시 검토
- '22.9. 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 상품 출시 - 연 2만원으로 재난 피해보상이 가능한 보험상품 출시

개선효과



• 전국의 음식점 중 약 85%를 차지하는 소규모(100㎡미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감 완화 및 국민의 피해 보상 보장



interview



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 출시로 재난보장 ok !



♠ 경기도 안산시 위생정책과 김애임 ☎ 031-481-3975

소규모 음식점(100㎡미만)은 매일 불을 사용하는 화재 취약시설임에도 가입가능한 재난배상보험이 없습니다. 반면 100㎡이상 음식점(25%)은 월 2만원의 저렴한 보험료와 대물 10억까지 보상해주는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있어 영업주의 피해배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외식문화 증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이용률 높은 소규모 음식점(75%)이 가입 가능한 재난희망보험을 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주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까지 재난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 재난취약시설 사각지대를 해소시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품은 보험사 측에는 저렴한 보험료에 비해 보장액이 커서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지만 많은 소상공인이 가입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 두배로 확대

☆ 추진부서 │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031-887-3031

개선배경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2

(원칙)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공장의 신설 · 증설 · 이전 · 업종 변경 금지

(예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기타지역]

- 현지 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 기존 공장의 증설 (신·증설 결과 공장 건축면적이 1,000㎡이내)
- 도시형공장, 건축자재업종 공장, 중소기업으로 신·증설 결과 1,000㎡이내 (이하 생략)
- 공장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양은, 공장건축(제조)면적이 아닌 업종별생산시설과 공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환경 관련법이나 규칙에서 규제를 하여야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보전권역의 공장건축(제조)면적을일률적으로 1,000㎡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
 예외규정 적용 면적 확대 건의코자 하였음.

개선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 4, 11,)
 - 시행령 [별표3] 제3호나목 중 "1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한다

개선 전

나.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선 후

나.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추진과정



'20. 9.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스템 신고(산자부)

'20. 7. 경기도 규제개혁과 기업 현장 간담회 건의

'21, 4, 경기도 규제개혁과 건의

'21. 5.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스템 신고(산자부)

'22, 7,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현황조사 제출

'23. 3. 기업현장 맞손토크 실무회의 건의, 경기도 규제개혁과 중앙과제 건의

'23.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 4. 11.)



-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 8개 지자체*의 공장 증설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더불어 신규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 여주, 이천, 광주, 양평, 가평, 용인, 안성, 남양주





융·복합 기업을 막는 지식산업센터 입지 규제 개선

추진부서 │ 안양시 정책기획과 ☎ 031-8045-2211

개선배경



- 2018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던 기업을 발견. 동 기업은 자사의 IoT 기술을 타사 제품에 응용하는 융복합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제조기업임.
- 그런데 산업집적법령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자사 생산 제품만 판매할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즉, 자사의 기술과 타사 제품을 융합한 '융복합제품'은 판매할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기업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든지, 추가로 자금을 들여서 판매장으로 이용할 별도의 사업장을 얻는 것 뿐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는 빠른 산업환경의 변화를 포용하지 못한 입지규제라고 판단하게 됨.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을 기존 제품에 접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의 심화이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 수없이 많은 융·복합 기술이 창조될 것이기 때문임.

개선내용



개선 전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융 · 복합 제품 판매가 불가함에 따른 기업의 퇴거 위기 발생



개선 후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융 · 복합** 제품 판매가 가능해졌음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 ☞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산업융합 신제품)으로확대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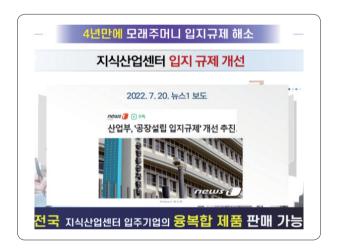
'18. 12.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발굴

'19.~'22. 중앙부처 건의(10회)와 소통(32회), 기업과의 소통(67회) 추진

'23. 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 국내 융 · 복합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융 · 복합의 핵심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관련 세계시장(1,578조 규모) 진출 기대





기업애로

소규모 제조기업의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불가 규제 개선

추진부서 │ 안양시 정책기획과, 기업경제과 ☎ 031-8045-2211

개선배경



-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업(공장)은 큰 공장과는 달리 같은 지자체 내에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등록 항목에 '공장소재지'가 없어 변경등록이 불가능했음.
 즉 기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한 후 신규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임. 예를들어 바로 옆 사무실로 이전해도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했음.
- 신규등록으로 처리되면, 등록면허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장등록증상의 공장 운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록되어 각종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사를 자주하는 중소기업에게 특히 불리한 규제임.

▲ 규제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장등록신청서)

-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생략)
 -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2. 업종
 - 3. 공장의 증설
 - '공장 소재지' 없음

회사명, 대표자 성명, 시설면적...

개선내용



개선 전

소규모 제조기업이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하지 못 하고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해야 함에 따른 다양한 불편 발생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
 - ☞ 소규모 공장의 변경 등록 대상 항목에 '공장소재지' 추가



개선 후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으로 소규모 제조기업이 관내 이전시 불편 없이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되었음

2023. 5. 22.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장등록신청서)

 제2형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생략)
 1. 제1조제1항 각호의 사람(회사명, 대표자, 성명, 면적...)

3. 공장의 증설

4. 공장 소재지 <신설>

추진과정



'19. 4.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발굴

'19, 4~'22, 3 중앙부처 건의(6회)와 소통(20회) 추진

'22. 3. 「안양시-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개최 등 노력

'23, 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



- 소규모(500㎡ 미만) 공장의 관내 이전시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로 전국 약 8만 개 소규모 제조기업(공장)의 행정부담이 크게 해소
-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각종 입찰시 중요한 지역 내 기업 운영이력 유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interview



규제혁신의 선도도시, 안양으로 오세요!



♠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권구현 ☎ 031-8045-2211

안양의 이야기를 대표로 전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시는 4년에 걸친 칠전 팔기의 노력으로 기업의 발목에 달린 무거운 모래주머니 같았던 「입지규제」를 해결하여 전국의 중소기업을 살렸습니다.

첫 번째, 융복합 기업의 발목을 잡는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규제로 인해 자사의 기술을 타 사 제품에 융합한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기업의 애로를 발굴한 후 4년의 노력 끝에 2023년 5월 산업집적법 시행 규칙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전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스마트 시계, 스마트 조명과 같은 융복합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장의 관내 이전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바로 옆 사무실로 이전해도'변경등록'하지 못 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취소 한 후에 신규 등록하게 됨에 따른 등록면허세 재납부, 공장운영기록 삭제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이사를 자주 하는 중소기업에게 특히 불리한 이 규제도 개선했습니다. 이제 전국 소규모 제조기업이 불편 없이 관내에서 변경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양은 명실상부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안양시 규제혁신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제혁신에 대한 리더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입니다. 규제개혁은 언제나 최우선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추진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기존 규제를 파헤치고 이것에 도전해야 하는 규제혁신은 어디를 가나'불편한 존재'입니다. 여러 곳에서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양은 기초지자체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직원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등 탄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이를 동력 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국민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규제개혁'을 씩씩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로 추진 환경을 조성해주신 최대호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안양은 규제혁신에 진심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규제개혁팀이 직접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다년간 우수사례를 창출하는 전국 유일 지자체입니다. 안양은 왜이렇게 열심히 하는걸까요? 규제혁신이 기업과 국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나아가서는 국가를 살리는 절실한 미션이라는 것을 다년간의 성과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난한 규제개선 과정 속에서도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가매번 수용되지 못하고 좌절되었으나 끊임없는 기업과의 소통으로 현장의 생생한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결국 규제부처로부터 수용의견을이끌어냈습니다.

감사할 분들이 많습니다. 규제개혁팀의 든든한 네비게이션 정소영 팀장님을 비롯하여 적극행정·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안양시 전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지방규제개혁을 지원해주시는 경기도 규제개혁과에 감사드립니다. 규제 업무는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치있는 일이라 어려운 것이겠죠? 전국의 규제 업무 담당자분들 응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국의 기업을 응원드립니다. 규제혁신의 중심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최고 스마트 혁신도시인 안양이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안양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기업애로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해소

☆진부서 | 남양주시 법무담당관 ☎ 031-590-7310 남양주시 기업지원과 ☎ 031-590-2736 남양주시 건축과 ☎ 031-590-1384

개선배경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의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방침을 시행중임
 - 관련 매뉴얼에는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득하려면, 건축물대장상 용도란에 "기숙사·숙소"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가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작성 시 용도란에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 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괄호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영 [별표 1] 17. 공장의 부속용도(하위 목)가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기숙사(숙소)와 가장 유사한 용도(구체적인 명칭)를 기재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인력수급이 어려워 중소기업 경영에 애로 발생

[피해 사례]

- 사업주 A는 금속 정밀 공업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소규모 사업체로, 내국인 인력수급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절실하여.
-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시비(기업환경 개선사업)를 지원받아 기숙사를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용도'에 '기숙사' 표기)를 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하여 기업 경영에 막대한 차질 발생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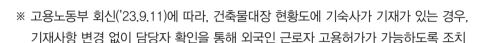
개선 전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란에 "기숙사·숙소"로 기재되지 않으면 불법 가설건축물로 간주되어 외국인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음.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인력수급을 어렵게 해 중소기업 경영에 애로 발생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기숙사 · 숙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황도(평면도) 에 기재되어 있으면 기숙사로 인정

 실제 현황도에 표기된 내용대로 건축물이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허가권자(지자체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가능



추진과정



'22.6.30. / 8.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 건의 (市 → 국토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 공장에 기숙사·숙소를 건축물

<u>부속용도 범위에 포함</u>하는 내용 추가

'23.3.29. 중소기업 걸림돌 규제 현장간담회 개최

- (道) 규제개혁과. (市) 기업지원과. 법무담당관. 관련 기업

²23.4.19. 기숙사·숙소 규정 합리화 (道 → 고용노동부, 국토부) 건의

²23.5.15. 기숙사 · 숙소 규정 합리화 (市 법무담당관 → 고용노동부)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기숙사·숙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황도(평면도)에 기재되어 있으면 기숙사로 인정



- 2개월('23. 8~9월) 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7개 기업 기숙사(숙소)인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完
-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 부담 경감

기업애로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증설, 틈새 규정으로 해결

☆진부서 │ 고양시 기업지원과 ☎ 031-8075-3577

개선배경



 고양시의 중첩 규제는 기업유치 등 지역 발전 및 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민 · 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조차 기업 활동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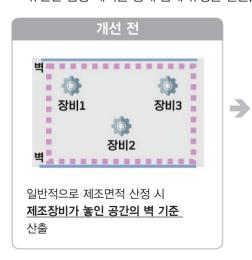
※ 고양시 중첩 규제: 과밀억제권역(100%), 개발제한구역(42.1%), 군사보호구역(35.2%) 등

- 고양시 덕양구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A기업은 2012년부터 꾸준히 공장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노력을 실시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판로 개척 및 근로시간 52시간 제한으로 인한 생산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조시설 확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 증축 가능 면적은 '창고 등 부대시설로만 사용 가능, 제조 장비 증설은 불가'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조시설 증설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음.

개선내용



•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틈새 규정을 발굴. 제조시설 증설 가능성 확인





 일반적으로 제조면적을 제조장비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산업집적법상 가능한 제조시설면적 구획 방안을 적용하여 제조장비 외곽을 기준으로 제조면적 산출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집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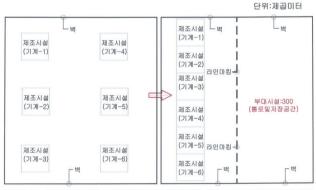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제조시설면적 산출 구획 관련 산업부 질의 (2019, 9, 29, 질의/2019,11,8, 답변)

공장건축면적 (별첨 도면)



기존(그림-1)제조시설:600,부대시설:없음 변경(그림-2)제조시설:300,부대시설:300

- Q. 별첨 도면과 같이 기존 제조시설을 밀집시키고 라인을 마킹하여 통로와 적재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통로 및 적재공간 면적을 제조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지?
- A. 해당 부분이 제조시설에 대한 관리/지원하거나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할 경우, 부대시설로 간주 가능 ⇒ 상기 2가지 사례 모두 인정(유불리에 따라 선택 가능)

• 건축 연면적 2716.91㎡ 중에 증축 927.66㎡ (제조시설면적 증설 250.92㎡)







증 축 전

증 축 후

추진과정



- '20. 6. A기업 공장증축허가(설계변경) 신청
- '20, 6, 건축 부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 협의
 - (기업지원과 조건부회신) 사용승인 전 공장부지 증가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득할 것
- '20.11. 기업지원과, OO기업의 개발행위(창고증축)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기업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창고가 아닌 제조시설 확장(추가)이라는 것을 인지
- 20.11. 제조시설 증설 관련 기업애로 상담 출장
- '21, 2. 관련 부서 간 실무협의를 거쳐, 공장증설승인 처리
- '22. 5.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승인 처리
- '22.12. 공장 증설 승인 완료신고 처리



- A기업은 공장 증설로 현대식 제조시설을 갖추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출액 2020년 91억 → 2023년 270억(예상), 종업원 수 2020년 100명 → 2023년 130명
-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해당 사례의 적용으로 도심 내 부족한 개발가용지 확보와 기업의 이전 비용 지출 절감 효과 기대

기업애로

개선배경



조례개정을 통해 외투기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추진부서 │ 경기도 세정과 ☎ 031-8008-4153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조례감면을 통해 최대 15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감면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 수준의 감면만을 허용하고 있음
 - ※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12개 시도의 경우는 조례를 통해 최대 허용치 적용
- 경기도의 제한적 세제지원은 타지역 대비 불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자발적 역차별을 초래함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 현황을 볼 때, 경기도는 경제 규모 및 인구수 등 외형에 비해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 현황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902개 (100%)	955개 (100%)	842개 (100%)	1,342개 (100%)	1,680개 (100%)
경기도	182개 (20.2%)	196개 (20.5%)	158개 (18.8%)	251개(18.7%)	312개 (18.6%)
서울	472개 (52.3%)	498개 (52.1%)	464개 (55.1%)	664개 (49.5%)	790개 (47.0%)
인천	65개 (7.2%)	97개 (10.2%)	83개 (9.9%)	231개(17.2%)	324개 (19.3%)

※ 서울시 쏠림현상 지속, 인천시의 비중은 지속 증가

개선내용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개선 전	개 선 후
신규 취득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 100% 감면	
사업용 부 동 산	그 다음 3년 이내 : 50% 감면	사업개시 후 15년 이내 : 100% 감면
사업양수	사업개시 후 5년 이내 : 50% 감면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 50% 감면
사업용	그 다음 3년 이내 : 30% 감면	현행 유지
부동산	사업개시 전 취득 : 50% 감면	현행 유지

※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를 고려하여 신규 취득과 사업양수 취득에 대한 감면률 차등적용

추진과정



- '23, 2, 7, 경기도지사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 정책 목표 제시
- '23. 3.16.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내부 검토회의 및 경기도의회 협의 *

 * 신속한 조례개정을 위해 의원입법발의 추진
- '23. 3.21. 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개정안 마련
- '23. 4.27.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
- '23. 5.17.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개선효과



-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을 수반한 첨단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선진기술 도입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지원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경기도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에 기여함

경기도, 외투기업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15 년으로 확대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 조례'를 오는 17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이 7년에 서 15년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외투기업이 기준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면 7년까지 취득세 를 전액 감면합니다.

기존에는 5년까지연습니다

8년부터 10년까지는 취득세를 30% 감면해줍니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의 투자유치' 계획이 단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도하기 카카오톡: 'KBS제보' 검색 전화: 02-781-1234 이메일: kbs1234@kbs.co.kr 뉴스홈페이지: https://goo.gl/4bWb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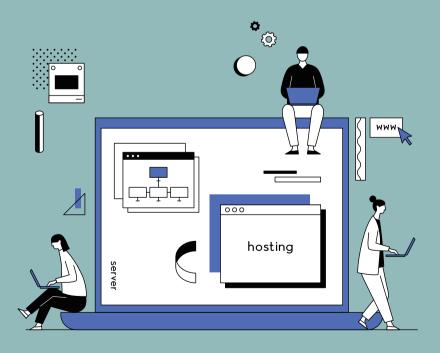
PARTO3

공공행정

- 01 |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 02 □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A to Z』 건축물표시(용도)변경 'ONE STOP 서비스'
- 03 | 어린이집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국도비 지원사업 3년연장
- **04** I 훼손된 GB의 공원녹지 복구를 위한 제도개선
- 05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규제개선
- 06 | 개발제한구역 수질관련 해제기준 완화



2023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공공행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 추진부서** │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031-729-2932

개선배경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어린이집과 교육부 유아교육 유치원 학사일정은 3월 개원, 다음 해 2월 졸업(수료)은 동일하나, 하반기 출생자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2월 말, 유치원 교사는 다음 해 2월 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어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정년)이 이원화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의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으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이 재원아의 졸업(수료)을 2개월 남기고 교체되어 불안정한 보육환경 조성

개선내용



●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이 담임교사와 졸업(수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일자 변경: 12월 → 다음해 2월 (유치원 교사와 동일)



개선 전

보육사업안내(지침) 내 '인건비 지원 원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조리사)은 만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하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개선 후

보육사업안내(지침) 내 '인건비 지원 원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 세),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출생월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 * 2023년에 만60세가 되는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용

1963년생	현행기준	개정기준	'23년 예외적용
1.1.~2.28.	'23.6.30.	'23,2,28,	'23.8.31.
3.1.~6.30.	'23.6.30.	'23.8.31.	
7.1.~8.31.	'23.12.31.	'23.8.31.	'24,2,28,
9.1.~12,31.	'23.12.31.	'24.2.28.	

추진과정



- '22. 9.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개정 건의
- '22.10. 규제개혁신문고 보건복지부 답변 → 중장기 검토
- '23. 3. 『2023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시행(인건비 지원 기준) 및 규제개혁신문고 보건복지부 재답변 → 수용



- 반 편성 및 학기 운영 시기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동일 적용
- 전국 시군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확산 · 적용
 - * 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

interview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김말희 ☎ 031-729-2932

2004년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20여년 만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상은 그동안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온 성남시 직원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물로, 다만 제가 대표해서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개혁함으로써 기업 하기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및 『보육사업 안내』(지침)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은 불합리했습니다. 어린이집 학기는 매년 3월에 시작해서 다음 해 2월에 끝나지만, 정년으로 출생 월이 7월에서 12월까지인 보육교직원은 12월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과 교육부 유치원 학사일정은 3월 개원, 다음 해 2월 졸업으로 동일하나, 인건비지원 상한 기준은 달랐기에 이원화되어 있는 교직원 인건비지원 기준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 및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한 노력 끝에, 지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아이들이 담임교사와 졸업까지 함께 할 수 있게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 일자가 보육교직원의 출생일이 3월에서 8월까지의 출생자는 8월 말 기준으로, 9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의 출생자는 다음 해 2월 말 기준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이 어린이집 학기 운영 시기를 연계하여 공백없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동은 교사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교사는 책임감 있게 반 운영을, 보호자는 아이를 믿고 맡기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의지로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듯이,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02

공공행정

개선배경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A to Z』 건축물표시(용도)변경 'ONE STOP 서비스'

추진부서 | 양주시 건축과 ☎ 031-8082-6655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했던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상 29종의 건축물 용도를 비슷한 용도별로 9개의 시설군으로 묶어 같은 군의 경우 용도변경 허가 · 신고제가 아닌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대행사가 아닌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함.

예)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 산업 등 시설군에는

[가.운수시설, 나.창고시설, 다.공장, 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자원순환관련시설, 바.묘지시설, 사.장례시설]이 있으며 가~사는 같은 시설군으로 시설상호간 용도를 변경할 경우 건축물표시변경신고 대상임.

- 그 동안 건축물표시(용도)변경 신청은 민원인이 시청을 직접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후 간단한 변경일 경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해 왔으나, 그 밖의 건은 변경도면 등 구비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상당수가 대행사를 통해 민원서류를 제출함.
- 이러한 경우, 시청 방문 이후 <u>대행사에서 민원서류 구비부터 민원처리까지 최소 15일</u> <u>이상 소요되고 건당 약 1 ~ 3백만원의 설계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u> 규제 완화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개선 전

● 민원처리 절차

- ① 민원인 시청 건축과 방문
- ②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담당자)
- ③ 민원인 대행사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④ 시. 민원처리
- ※ 대행사에 요청시 처리 기간 20일 이상 소요

● 대행료

- 2022년 총 민원 처리 건수: 407건
- 대행료 : 건당 1∼3백만원 소요
- 2022년 민원인 부담 대행료: 407 × 200만원 = 약 8.14억원

개선 후

● 민원처리 절차 단축

- ① 민원인 시청 건축과 방문
- ②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 작성
- ③ 시, 민원처리

● 대행료 절감

- 2023, 1, ∼ 6, 30일까지 실적
-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187건 중 78건 ONE STOP 서비스 실시
- 대행료 절감액
- : 78 × 200만원 = 약 1.56억 절감

〈 건축물표시(용도)변경 ONE STOP 서비스 〉



민원인 방문 상담과 동시에 신청서류 작성 및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 상승



민원인 방문 상담과 동시에 신청서류 작성 및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 상승

추진과정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담당자들과 함께하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작성부터 처리까지 ONE STOP 서비스"를 통해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부터 변경 도면을 직접 CAD 등을 활용해 작성 및 수정하여 민원처리(「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직공무원은 건축물 현황도 작성 가능)
- 그동안 대행사를 통해 접수하였던 민원을 시청에 직접 방문 및 접수하도록 유도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감경

'23.01.01. 건축물표시변경 ONE STOP서비스 시행

'23,08,28. 건축물표시변경 ONE STOP서비스 추진계획 보고



- 민원처리 절차 단축
 - → ④단계에서 ③단계로 단축됨에 따라 10일 이상 기간 단축
- 연간 처리건수 400건 중 40%인 160건 ONE STOP서비스 시행 시 약 3억2천만원의 민원인 부담 대행료를 절감할 수 있음

interview



건축물표시(용도)변경 ONE STOP 서비스로 행정절차 간소화, 민원만족도 Up!



경기도 양주시 건축과 최소윤 ☎ 031-8082-6655

건축물 표시(용도)변경 ONE STOP 서비스는 건축 관련 업무를 오래 해오신 과장님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행사(설계사무소)를 통하여 표시변경을 진행할 경우, 민원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만족행정 추진을 위해 담당자와 함께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전원 오토캐드(AutoCAD)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의 지지와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팀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서비스였습니다.

건축물 표시(용도) 변경 무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시청을 방문하시면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공한다는 사실을 안내해 드렸고,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단축된다는 말에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민원인분들이 한껏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실 수 있는 사실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한 담당자는 도면을 직접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면을 왜곡하거나 정보를 다르게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때문에 민원인분과 함께 신청서 작성 시변경될 도면에 대한 파악은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건축과를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이 표시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습니다.

공공행정

어린이집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국도비 지원사업 3년연장

☞ 수진부서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031-8008-3497

개선배경



- 기존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제16416호.'19. 4.30.)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2.12.31.일까지 유효한 일몰사업임
 - 지원규모: 동당 4천만원(국비1:지방비1:자부담1 균등분담)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의 제한 및 방역관련 문제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시점 확보가 어려워 사업접수 및 추진 일정이 지연
- 또한 보강의무가 발생된 어린이집. 학원 등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착수가 여의치 않은 상태임에도 벌칙* 규정에 따라 다수의 범법자 양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 '22.12.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게 벌칙규정 적용
-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경기도 및 전국의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 건축주 경제적 부담 경감
- 「건축물관리법」개정

개선 전

제29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개선 후

제29조의2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선 전

- ③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 ④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 부칙〈법률 제16416호, 2019. 4.3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은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개선 후

- ③ 삭제
- ④ 삭제
- ※ 부칙〈법률 제19367호, 2023. 4.1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은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추진과정



'21.12.31.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국토부)

* 이후 국토부 방문건의('22.5.24.) 및 공문건의('22.6.13.) 추가실시

'22. 9.16.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국회 유경준 의원 등 10인)

'23. 4.18.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공포(제19367호)

※ 개정사항: 부칙〈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도내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약300동(전국 2,106동)에 사업비 지원을 통해 보강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비가 지원되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건축물관리자의 비용부담
 완화

04

공공행정

훼손된 GB의 공원녹지 복구를 위한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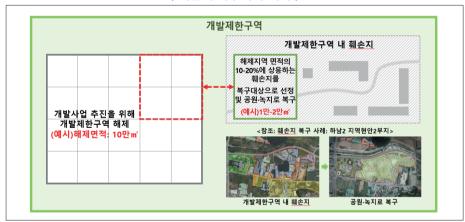
*** 추진부서** │ 경기도 공간전략과 ☎ 031-8008-6165

개선배경



- GB 해제사업 시 사업시행자는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 · 녹지로 복구하여야 하나, 복구대상지 부재 등을 사유로 법적 최소 수준(10%)*으로만 복구하거나.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등으로 개발이익의 도비 환수 미흡
 - * '09~'19 훼손지 복구사업(37개 사업: 복구사업 25건, 보전부담금 12건) 중 평균 복구비율 11%
 - ** 보전부담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로 귀속되며, 국비 납부액 대비 道 지원액은 33.4%(17~'21, 납부액 5,700억원/지원액 1,900억원) 수준으로 道의 실질적인 개발이익환수 효과 미미

〈훼손지 복구계획 예시 〉



☞ 보전부담금을 지양하고, 3기 신도시에 대해 복구면적을 15%이상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법령개정을 통해 복구대상지 확대를 추진

개선내용



개선 전

훼손지 복구 대상지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내 장기미집행공원이 대상'으로 한정.



개선 후

복구대상지를 '대(堂)· 공장용지· 창고 용지 및 잡종지' '백두대간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맥의 능선으로 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불법 물건 적치지역'을 추가하여 확대

추진과정



'20. 8. 제도개선 방향 보고

'21, 2, / 4, 국토부 회의 및 방문 건의

'22. 5.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입법(정부) / 6.10 개정 / 12.11. 시행 훼손지 복구계획 시행령개정(안) 마련 및 개정 건의(공문)

'22.12.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시행

개선효과



-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 보전하고, 불법 적치물 정비를 통한 효과적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가능해지고, 광교산에서 군포 수리산, 부천 성주산 등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 등 주요 녹지축을 복원할 수 있는 실행력이 확보될 것임
- 또한, 훼손지 복구사업 확대를 통한 도시민을 위한 공원녹지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 참고로,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GB해제 사업(약 34㎢)에 대한 해제조건으로 GB내 훼손지 약 5㎢를 공원녹지로 조성예정

〈 00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및 복구계획 조감도 〉







05

공공행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규제개선

☆ 추진부서 │ 경기도 교육협력과 ☎ 031-8008-4812

개선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하여 보조의 신청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편성지침(308-08)에 각급 학교로 보조하도록 되어있어 교육청·교육지원청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없었음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9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시·군·자치구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통계목 부재로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제6조 [별표11]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통계목 (308-08) 개선으로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육기관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통계목(308-11)을 신설하여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을 원활하게 하였음. 특히, 기존 교육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회계분리 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사업집행 및 정산 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큰 역할을 함

개선내용



개선 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 1. (308-08) 시·도 및 시·군·자 치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로 보조
- 2.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통계** 목 부재로 시·군·구-교육청 협 력사업추진 불가



개선 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 1. (308-08) 시·도 및 시·군·자치 구가 **직접 또는 교육감·교육장을** 통하여 각급 학교로 보조
- 2. (308-11 신설) 시 · 군 · 자치구 교 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통계목 신설로 협력사업 추진 가능

추진과정



- '22.5.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건의 요청(1차)
 - 시·군·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
- '22.5.1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건의 요청(2차)
 - 시·군·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
- '23.2.1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건의 요청(3차)
 - 시·군·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개선
- '23.2.2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송부
 - 시·군·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개선
- '23.7.3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
 - 시·군·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개선



-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통계목 신설로 시·군·구—교육청 협력사업 추진 가능해졌음
- 또한,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통해 보조가 가능해짐으로써,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교부가 원활해 졌으며, 예산보조를 받는 학교는 하나의 회계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음
- 무엇보다 전국 508,850명의 학교 교직원이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더 이상 자치단체 재원과 교육청 재원의 회계분리로 인한 업무 혼란 및 행정 낭비를 격지 않게 되었음



06

공공행정

개발제한구역 수질관련 해제기준 완화

출진부서 │ 경기도 공간전략과 ☎ 031-8008-6161

개선배경



- 모든 개발제한구역은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의 환경관련 항목을 1에서 5등급으로 평가하고, 그중 최고 등급으로 종합등급이 결정되는데, 종합등급이 1∼2등급인 경우는 해제가 불가함
-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지역들은 다른 지표와 상관없이 수질 1~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왜냐하면 물환경 목표기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중권역별로 고시하는데, 팔당지역은 당연히 목표기준과, 이와 연동되는 폐수배출시설배출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대상지의 훼손상태나, 보전 필요성 등과 상관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하여 정비나 계획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해제가 불가한 수질 1∼2등급지는 경기도내 전체 개발제한구역 1,157㎢ 중 22%인 약 246㎢에 달함

〈 구리시내 한강변 1~2등급지내 훼손 현황 〉







☞ 수질은 개발로 훼손되는 농업 · 임업 · 식물상 등 타 평가항목과 달리, 적절한 개선대책을 통해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개선내용



개선 전

표고 · 경사도 · 농업적성도 · 임업적 성도 · 식물상 · 수질 등에 대한 환경 평가등급이 1~2등급지는 개발제한 구역을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



개선 후

수질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해제 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해제 및 그로 인한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1~2등급지를 포함하여 해제할 수 있음

추진과정



'22. 7.18. 불합리한 GB 환경평가등급 등급 사례조사

'22. 8.23. GB환경평가등급(수질) 제도개선(안) 마련 및 방침결정

'22, 8,23, 국토부 방문 제도 개선사항 설명 및 협의

'22. 9.30. GB환경평가등급(수질) 관련 제도개선 건의(道⇒국토부)

'22.12.22. GB해제 제도 개선 국토부-시·도 과장급 회의

'23. 7.2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 시행



- 수질 1~2등급지가 대부분인 경기동북부 팔당지역 개발사업이 적절한 수질오염원 관리대책만 수립을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짐
- 경제적으로는, 구리, 하남시 등 경기 동북부에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했던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기대됨
- 환경적으로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적절한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으로 불법 난개발된 개발제한구역이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며, 수질개선 기술도 더욱 발전하게 되면서 팔당상수원에 대한 효과적인 수질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PART
04

생활·불편

- 01 |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관련 원주민 차별법령 개정
- 02 |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 절차 불편 해소
- 03 |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개선을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 04 | 청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 재계약 요건 개선
- 05 | 전세피해자 피해지원 확대



2023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01 생활·불편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관련 원주민 차별법령 개정

- 추진부서 │ 경기도 시흥시 신도시사업과 ☎ 031-310-3941

개선배경



- 광명시흥지구는 국가정책의 변화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고, 지역 난개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지정 되었고,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 및 재산권 행사 제약이 있는 지역임
 - * (광명시흥지구 국가정책의 변화 과정) GB(개발제한구역)지역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GB해제(2010)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2015) →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특별관리지역 해제(2022, 11,)
- 이후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특별관리 지역에서의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함
 - 협의양도인주택 특별공급(협의양도 시 무주택자 아파트 분양권 공급) 지원 혜택에서 제외 등
- 타 3기 신도시에 비해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아 원주민 재산 피해 발생
-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사회적 갈등 유발

개선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개정(2022. 12. 29.)으로 특별관리지역에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 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한해 주택특별공급 혜택 제공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에 비해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차별 존재)



개선 후

특별관리지역 등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 시행 시에도 주택특별 공급 혜택 제공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한 협의양도인 주택 기준 적용)

기존

제37조(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에서 해당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 택을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 법률

제37조(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①「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이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 구역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해당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 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을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 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추진과정



'21.7. 중앙부처 회의(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및 법률 개정 건의

'21.8. 법률 개정 관련 회의(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21.10.} 법률 개정 관련 국토부 회의(시흥시, 신도시대책위)

'21.10.~11. 3기 신도시 지자체장 조찬회의 건의, 경기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안건제출

'22.1. 특별관리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요청(국토부) 및 논의(문정복 국회의원)

'22.4.~12. 민관공 협의체 회의 총 7회 개최 (국토부,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주민대표 등)

'22.5. 경기도 규제합리화 순회간담회 안건 발표(국무조정실, 경기도 등)

'22.5. 특별관리지역 법령 개정 관련 관계기관 논의(국민권익위 주재)

'22.7.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 제출

'22.7.~9. 특별관리지역 관련법 개정 논의 및 추가 건의(권익위, 국토부, 시흥시 등)

'22.11. 시흥시장, 광명시장,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여의도 국회)

개선효과

• 차별법령 개정으로 원주민의 재산상 피해 방지와 재정착 지원에 기여



〈 관련 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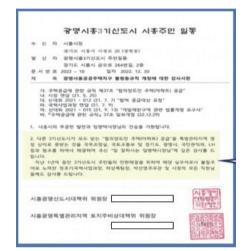
주민 간담회



민관공협의체 회의



2023년 신년인사회 주민감사표현



주민감사서한



interview



주민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다



♠ 경기도 시흥시 신도시사업과 하상록 ☎ 031-310-3941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 됐으나,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됐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준하는 행위제한과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타 3기 신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협의양도시 무주택자 아파트 분양권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3기 신도시에 비해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타 3기 신도시와 동일한 공급기준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시는 약 2년에 걸쳐 주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법령 개정을 위해 주민과 함께 끊임 없이 소통한 결과 지역주민들과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령 개정 후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감사서한 등 감사의 뜻을 여러 차례 표현해 주셔서 공직자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에 다른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와 차별 없는 주민지원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제약이 되므로,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

생활·불편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 절차 불편 해소

출 031-5189-6192 추진부서 │ 경기도 화성시 도시정책과 ☎ **031-5189-6192**

개선배경



-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제로 관리받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저온저장고의 경우 명문규정이 없어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었음.
-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시설인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건축사를 통한 설계의뢰 및 신청 등으로 농업인에게 커다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었음.
- 또한, 관내 농업지원 부서에서 영농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위 규제때문에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개선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 제7호의2 신설을 통해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신고처리 근거 마련

개선 전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허가 필요

(신청절차) 건축사를 통한 설계의뢰 및 신청 (허가절차 진행)

(처리기간) 약 1개월 소요

(처리비용) 약 300만원

(건축사 설계의뢰 비용 + 공과금 등)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절차를 통해 저온저장고 설치 가능

(신청절차) 건축사 설계의뢰 없이 농업 인이 직접 신청 가능 (신고절차 진행)

(처리기간) 약 7일 소요

(처리비용) 약 1만원 (공과금)



〈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 사진 〉



추진과정



'21.10. 경기도, 국토교통부 워크숍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필요성 발표

'21.11. 규제개혁신문고(국무조정실)를 통해 규제완화 건의서 제출

'22.5.2. 규제완화 건의 국토교통부 답변 회신(건의 수용)

'23.2.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저온저장고 설치 관련 규정을 신고의 대상에 신설(영 제19조)



-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민생불편 대폭 해소
-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의 편의증진 및 생산성 향상
- 자치법규가 아닌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합리화 효과 전국적 확산

interview



개발제한구역 규제합리화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다.



화성시 도시정책과에서는 매월 팀 스터디를 개최하여 법령 및 질의회신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팀 스터디 연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실외 저온저장고 규정이 없어 설치가 곤란한 점이 불합리한 규제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 현장확인 및 민원인 면담을 통해 영농편의시설인 실외저장고 설치에 대한 법령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규제합리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토교통부 워크숍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필요성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규제개혁신문고(국무조정실)를 통해 규제완화 건의서 제출하는 등 노력한 결과 '22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의 수용이라는 답변을 얻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23년 2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법령 개정 후 실외 저온저장고 규정이 신고의 대상에 신설되어, 개정 전 보다 절차적, 비용적, 시간적으로 크게 간소화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향후 영농 편의시설인 실외 저온저장고 설치가 늘어나 영농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치법규가 아닌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이러한 기대효과가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영농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연구하는 자세로 규제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개선을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 추진부서 │ 경기도 상하수과 ☎ 031-8008-6938

개선배경



- 상수원보호구역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지역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요구 민원이 해마다 발생
 - ※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음식점 용도변경을 총 호수의 5% 이내로 제한
-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를 6개월간 매주 측정하여 수질 기준의 50% 이하로 방류하는 경우 총 호수의 10%까지 가능하나 기상이변, 불명수 유입 등으로 매주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 이내로 방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 2019년 남양주시 마현·능내·송천 공공하수처리장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수질검사를 하였으나 수질 기준의 50%를 초과하여 채수 중단
 - ☞ 화경부 질의회신을 통해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한 채수 시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 을 준용토록 해석하여 자연변수로 인한 채수 일정 변경 및 평상시와 수질 결과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재시험 후 광주시 4개 공공하수처리구역 행위제한 완화 지역으로 고시함

개선내용



음식점 비율

총 호수의 5% 이내

개선 전

채수 방법

매주 1회 측정. 1회 초과 시 중단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개선 후

총 호수의 10% 이내

기상이변 시 일정 조정.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재시험

수질 기준 50% 내 방류

- 유연한 법령해석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매주 50% 이내로 준수하는 것이 시설 개선으로 가능한 것을 증명한 사례
- 향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개선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

추진과정



- '23. 1. 환경정비구역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사전 조사
- '23. 4. 6. 현장 중심의 환경규제 혁신 및 개선과제 제출 (도→환경부)
 - 음식점 확대를 위한 채수 시 평균 수질 도입, 기상특보 시 연기토록 건의
- '23. 5. 24. 상수원 관리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 음식점 비율 확대 등 의견 제시
- '23. 6. 22. 상수원 관리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 음식점 총 호수 완화 등의 필요성 공감, 다만, 수질 영향 등을 연계하여 제도 개선 검토
 - 음식점 허용 호수 완화를 위한 채수 시 예외적 또는 자연적 변수는 관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
- '23. 8. 3. 상수원 관리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비율 및 면적 확대 방안 협의 등
- '23. 8. 7. 행위제한 완화 관련 채수 방법 회신 ('23.6.7. 질의)
 -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자연적 변수로 인한 채수 일정 변경의 불가피성 및 수질분석 결과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분석 후 판단
- '23. 2. 9. ~ 8. 9. 광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추진
- '23. 8. 25.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



- 음식점 비율: 광주시 4개 구역 기준 음식점 비율 확대(5%→10%)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해소하였고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위제한 완화 요구 합리적 수용 가능
- 채수 방법: 기상이변 시 연기,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재시험하여 적용 대상 확대
- **상수원 수질**: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개선 유도로 상수원 수질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 음식점 개업 따른 주민 채용으로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검사 〉



경안 공공하수처리장



광주 공공하수처리장



검천 공공하수처리장



수청 경안 공공하수처리장

〈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 관련 언론보도 〉



KBS (2023.8.25.)



연합뉴스 (2023.8.25.)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 재계약 요건 개선

☞ 추진부서 │ 경기도 주택정책과 ☎ 031-8008-4914

개선배경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량의 20%이상을 특별공급하고 있으며, 재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특별공급 주택에 입주한 청년이 임차계약 만기(2년) 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연령 소득조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혼인 요건은 적용하고 있음
- 청년이 입주기간에 혼인할 경우 청년 입주요건에 저촉되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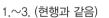
개선내용



- 국가공급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혼인을 해도 거주에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출산하면 최대 거주기간을 늘려주는 점을 착안.
- 민간임대주택도 청년이 임차기간에 혼인하여 신혼부부 요건을 갖출 경우 임차인 자격을 변경(신혼부부)하여 새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개선 전

1.~3. (생 략)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 중 다른 공급 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개선 후



추진과정



'23.5. 민간임대주택 재계약 요건 관련 민원접수 (청년기회과) 및

소관부서(주택정책과) 전달

'23.9.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건의 (도 주택정책과 → 국토교통부)

'23.11.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단독]청년특공 입주땐 결혼 못한다고?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재계약 시 미혼 유지해야 국토부 "제도 개선 추진하겠다...소급 적용 범위는 미확정"

개선효과



● 불합리한 법령 개정을 통해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여 혼인 및 출산장려





전세피해자 피해지원 확대



추진부서 │ 경기도 주택정책과 ☎ 031-8008-4923

개선배경



- 2023년 2월 인천 미추홐구에서 촉발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서울과 경기도를 거쳐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하였음.
 - ※ 특별법 제정 당시 임차보증금을 반화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가칭 갭투기 유형) 등의 경우 제외
- 더불어. 2021년초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던 주택가격이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됨에 따라, 당시 다주택자 대출규제인(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이하)로 적용하고 있어. 이로인해 임대인은 임차인 반환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져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다수의 임차인 전세피해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 '23.5.12. 정부(국토교통부)에 전세피해 유형 폭넓게 인정할 필요성과 맞춤형 피해지원을 통해 금융·세제·주거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건의함, 같은 달 금융위원회에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

개선내용



개선 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당시 '무자본 갭투기 유형'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에서 제외

(당초) ①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②임대인등의 기망 ③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 주택 양도

'다주택 임대인의'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대출규제 (DSR)

(현행) 다주택 임대인 DSR 40% 이하 적용

개선 호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무자본 갭투기 유형'전세사기피 해자의 요건 추가

(개선) ① + ② + ③ +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취득 · 임대 등의 경우" 포함



'다주택 임대인의'임차보증금 반환목 적 주택 담보대출'에 한하여 대출규제 (DSR) 한시적 완화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 대출 시 DSR 적용 제외(한시적 완화)

- 동탄 피해자 등의 피해유형이 전세사기피해자법 피해요건에 포함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정부 및 경기도 주거 · 금융 · 세제 등 피해 지원 가능
 - 정부 피해자 지원 방안
 - (주거)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유예, 공공임대 공급, 긴급주거 제공 등
 - (금융) 경락 자금대출, 저리 대환대출,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
 - (세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 경기도 피해자 지원 방안
 - 긴급주거 제공, 긴급지원주택 이주비(최대 150만원 실비) 지원, 긴급 생계비(100만원) 등 추진
- 2023.7.27일부터 1년간('23.7.27 ~ '24.7.31)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으로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 해소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후속조치,

DSR 40% → DTI 60%, RTI $1.25\sim1.5$ 배 → 1.0배)

추진과정



'23.2.27. 「경기도 차원의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방안」 마련

'23.5.11.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발표(도지사 정책브리핑)

'23.5.12. 전세피해지원특별법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 건의 (道→ 국토부, 금융위원회)

① 전세피해지원특별법 피해지원 대상 확대 건의

② 전세피해 지원관련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활성화 건의

'23. 7.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시행

'23.7.27.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시행(금융위원회)



- 동탄 피해자 유형인 무자본 갭투자 사례 등이 전세사기피해자법 피해요건에 포함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주거·금융·세제 등 피해에 대한 지원 가능
- 다주택 임대인의 대출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역전세로 인한 임차인 반환보증금을 제때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 해소에 도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
-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구시합기호 우수사건기집

발행일 2024년 1월

발행처 경기도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T. 031-8008-4129

편집제작 규제개혁과

